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25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6.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9. 5. 8. 접수 제62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07. 12. 20.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E에 대한 카드대금채권(2017. 10. 5. 기준 원금 5,056,458원, 이자 4,496,576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8. 1. 10. E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G는 2010. 8. 6.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9. 9. E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H은 2011.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22. E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8. E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0310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3. 11. 'E은 원고에게 10,406,397원과 그 중 5,056,458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9. 5. 8. 접수 제62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E과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9. 5. 7.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

별지

별 지 목 록

1. 충청남도 부여군

임야 8432㎡

의 2분의 1 지분 전체

